

MATERIAL SAFETY DATA SHEET

(물질안전보건자료)

1. 화학물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제 품 명 : HT-800 초고온용 그리이스

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

제품의 권고 용도: 윤활

제품의 사용상의 제한 : 용도외의 사용을 제한.

제 조 사 : THERMAL LUBE INC.

주 소 : 255 LAEROSSE AVE POINTE-CLAIRE, QUEEEEC, CANADA H9R-1A3

TEL : (514)694-5823 FAX : (514)694-8628

수 입 원 : 라우화학 주식회사 / www.rauh.kr / TEL : 02) 3401-5149

서울 송파구 중대로18길14 (가락동)

2. 유해성, 위험성

가. 화학물질의분류

-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:구분2

나.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시 항목

그림문자



신 호 어 : 경 고

유해. 위험문구 :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

예 방 : 취급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.

보호장갑, 보호의,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.

대 응 :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.

피부자극이 생기면 의학적인 조언 주의를 받으시오.

오염된 의복은 벗고 다시 사용 전 세탁하십시오.

저 장 : 해당없음

폐 기 : 해당없음

3.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 물질 명	CAS 번호	%
Polyalphaolefin	68037-01-4	70 - 80 %
Tungsten Disulfide	12138-09-9	5 - 15 %
Siloxanes & Silicones	67762-90-7	1 - 5 %
Additives	proprietary	0.1 - 1.0 %

4. 응급조치방법

가. 눈에 들어갔을 때

- 흐르는 깨끗한 물로 15분 이상 세척 후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.

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

- 오염된 의복을 제거한 후 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세척한다.
- 필요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.

다. 흡입했을 때

- 피해자를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, 신선한 공기를 마시도록 한다.
- 호흡하지 않을 경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인공호흡을 실시한다.
- 증상 발생 시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.

라. 먹었을 때

- 즉시 물로 입안을 행구어 내고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다.
- 의사의 지시가 없는 한 억지로 토하게 하지말것.

마. 의사의 주의사항

- 특별한 해독제가 없으므로 증상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한다.

5. 폭발, 화재시 대처방법

가. 자연 발화점 : 자료없음

나. 최저 인화 한계치 : 자료 없음.

다. 최고 인화 한계치 : 자료 없음.

라. 소방법에 의한 분류와 규제 내용 : 위험물 4류, 제4석유류

마. 소화제 : 포말, 건식 화학분말, 이산화탄소, 포말소화기 등.

바. 소화방법 및 장비

- 초기 화재시 포말, 분말, 이산화탄소, 등이 유효하며 기타의 경우 포에 의해 질식소화한다.
- 소규모 화재시 화재원 주변은 물 분무도 유효하다.
- 대형 화재 시는 규정 포말을 활용하여 소화한다.
- 지역 비상계획에 따라 대피나 격리가 필요한지 판단할 것.
- 물 스프레이를 사용해 화재에 노출된 용기를 식힐 것.
- 화학물질이 관련된 대형화재 진화시 개인호흡기와 보호 복을 반드시 착용할 것.

사.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

- 탄소 산화물과 불완전 연소된 탄소화합물.
- 질소 산화물, 등.

아. 사용해서는 안되는 소화제 : 설정되지 않음.

6. 누출 사고시 조치방법

가.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

- 눈과 피부에 제품이 접촉되는 것을 최소화시켜야 하며, 보호안경, 안전장갑, 안전화와 안전 복을 착용한다.

나.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

- 모래, 흙 또는 흡착포로 제거하고 유출 확산을 저지한다.

다. 정화 또는 제거방법

- 흡착제, 흡수제, 톱밥, 모래 등을 이용해서 번지는 것을 막고 제거한다.
- 다량의 경우 용기, 펌프 등으로 회수한다.
- 자연 발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물질을 충분히 닦아 내거나 완전히 흡수하여 폐기할 것.
- 물질의 누출이나 폐기시 또는 누출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관련 법규를 적용할 것. 어떤 법규가 해당되는지 결정해야만 함.

7. 취급 및 저장방법

가. 안전 취급 요령

-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취급할 것.
- 눈이나 피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할 것. 먹지 말 것, 산업위생을 적절히 관리할 것.
- 어린이 손에 닿지 않게 할 것.
- 화기에 주의하고 화염 불꽃, 고온물체와의 접촉을 피할 것.
- 취급 후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식음 및 흡연할 것.
-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할 것.

나. 보관 방법

- 가열금지, 화기주의,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하며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.
- 적절한 주의를 하고 산화성 물질과 멀리하여 보관할 것.
- 사용 후에는 반드시 밀봉할 것.

8.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가. 공학적 관리방법

- 연속 작업시 증기를 흡입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환기장치를 하여야 한다.
- 국소 환기 : 연속 작업 시, 또는 노출 허용치를 초과하는 경우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고 운용할 것.
- 일반 환기 : 추천함.

나. 호흡기 보호

- 일반 사용시 요구되지 않으나 연속 작업이나 노출 허용치를 초과 하는경우 호흡 보호구를 착용할 것.

다. 눈 보호 : 적절한 보호구 및 보호안경을 착용할것.

라. 손 보호 : 반복 접촉시 보호장갑(내 유성, 내 화학성)을 착용할 것.

마. 신체 보호 : 피부 접촉을 최소화 시키고 안전 복을 착용할 것.

바. 위생상 주의사항 : 먹거나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화장실에 가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와 물로 손을 깨끗이 씻을 것.

사. 노출기준 (TWA) :자료없음

9. 물리적 화학적 특성

가. 외 관 : 검은색

나. 냄새 : 약간의 냄새

다. 수소이온지수(pH) : 자료없음

라. 용해도 : 자료없음

마. 끓는점/끓는점범위 : 자료없음

바. 녹는점/녹는점 범위 : 자료없음

사. 폭발성 : 없음

아. 산화성 : 없음

자. 증기압 (mmhg) : 자료없음

차. 비중 : 1.07

카. 분배계수 : 자료없음

타. 증기밀도 : 8.49 lb/gal

파. 주 도 : 2

하. 분자량 : 자료없음

10. 안전성 및 반응성

가. 화학적 안정성 : 안정

나. 피해야 할 조건 및 물질 : 화기, 직사광선 및 강산화제

다.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: 질소 산화물, 탄소 산화물, 등.

11. 독성에 관한 정보

- 가. 급성 경구 독성 : 자료 없음
- 나. 급성 경피 독성 : 자료 없음
- 다. 급성 흡입 독성 : 자료 없음
- 라. 급 성 독 성 : 자료 없음
- 마. 만 성 독 성 : 자료 없음
- 바. 변이 원성 영향 : 자료 없음
- 사. 차세대 영향(생식독성) : 자료 없음
- 아. 발 암 성 영향 : 자료 없음
- 자. 기타 특이 사항 : 자료 없음
- 차 . 피부부식성 또는 자극성 : 피부 자극을 일으킴

12. 환경에 미치는 영향

- 가. 수생 및 생태독성 : 자료 없음.
- 나. 토양 이동성 : 자료 없음.
- 다. 잔류성 및 분해성 : 자료 없음.
- 라. 동 생물의 생체내 축적가능성 : 자료 없음.

13. 폐기시 주의사항

- 가. 폐기물 관리법상 규제현황
 - 폐기물관리법(법률 제4363호) 제 25 조에 의해 관리
- 나. 폐기방법
 -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, 제 44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 활용 하는자,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자, 또는해양 오염 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.
- 다. 폐기시 주의사항
 - 법에 따라 인가된 폐유 재생업자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 의뢰하여야 하며 절대로 임의 폐기하여 토양이나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.
 -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할 것.
 - 관련 법규에 따라 폐기할 것.

14. 운송에 필요한 정보

가. 선박안전법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의한 분류 및 규제

- 선박 및 항공 운송법에 미 규정(IMDG 코드에 해당사항 없음)

나. 운송시 주의사항

- 해당 관련법에 따라 운송하여야 함.
- 취급시 제 7항을 참조할 것.
- 누출사고 발생시 안전조치 사항은 제 6항을 참조할 것.

다. 기타 외국법에 의한 규제 : IATA법규에 해당되지 않음. (IATA-DGR : 항공운송)

15. 법적 규제 현황

가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
나.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
다.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
라.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
마.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: 해당없음

16. 그 밖의 참고사항

가. 자료의 출처 : THERMAL LUBE INC

나. 작성일자 : 2019년 3월 4일

다. 최초 작성 일자 :

다.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과 관련된 정보: 자료없음

라. 기타 참고사항

한국사업안전보건공단 MSDS 한글 DB를 참고하여 작성함.